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ER226)
 2. 집합투자업자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02-2167-8200)
 3. 판 매 회 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4. 작 성 기 준 일: 2026년 07월 2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0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2026년 01월 08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거래소의 상장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8.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및 해지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자금(납입금 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집합투자기구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납입금 등은 금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집합투자기구로 납입된 납입금 등을 기초로 집합투자업자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을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구성하게 되므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주식과 같은 실물을 납입금 등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정부의 성장 정책 지원 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내 핵심 기업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비교지수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액티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금(투자신탁분배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개인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ETF를 증권시장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 원활하게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동성공급자가 매수·매도호가를 제시하나, 거래량 부족, 장중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자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15.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 펀드로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와 달리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ER226]

투자위험등급						KB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u>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대비 초과성과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함으로써 초과성과 추구에 따른 위험, 종목·섹터 집중투자 위험,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위험,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와의 괴리 위험 및 상장폐지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를 비교지수로 하는 액티브 주식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비교지수를 추종하면서 다양한 초과수익 창출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 한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ABCDEF): AI(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Bio&Healthcare), 문화(Culture&Contents),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추가형,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	-	0.500	0.001	-	0.500	51	105	161	281	63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	2026-01-19	-	-	-	-	-				
	비교지수	2026-01-19	-	-	-	-	-				
	수익률 변동성	2026-01-19	-	-	-	-	-				
(주1) 비교지수: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중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도진	1998년	책임	35	77,442	62.76	88.14	107.06	144.26	3년 1개월	
	곽 찬	1984년	책임	5	5,905	-	-			10년 8개월	
	강신영	1985년	부책임	30	56,730	112.89	159.93			13년 11개월	
봉철우	1992년	부책임	24	23,677	123.01	138.58	7년 10개월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등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초과성과 추구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비교지수 구성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지주회사, 저PBR주 등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항상 초과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에 따라 비교지수대비 낮은 성과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적오차는 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따른 운용상의 결과이며, 지수와의 괴리도는 매일 공고되는 추적오차를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와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관리하여 비교지수와의 성과괴리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변경 또는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중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일시 또는 상당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헤지 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NAV(Indicative Net Asset Value, 추정순자산가치)는 ETF를 구성하는 기초종목들의 최근 가격에 기반한 예상가격으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contents/MDC/MAIN/main/index.cmd), 거래 증권사 HTS 또는 ETF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종목의 일부 편입가능성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 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계약조건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시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의 조건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기 청산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유동성이 적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 또는 구조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 손실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환매방법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지구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 ·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지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계좌 · 클래스 · 펀드 투자자의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주식회사 (☎ 02-2167-82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kbam.co.kr)		
모집기간	2026년 01월 08일부터 투자선택의 해지일까지	모집 매출 총액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이 없음
효력발생일	2026년 08월 0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선택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의 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41~p.4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정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ER22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또는 “ETF”라고 함)(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투자신탁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계속해서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탁계약기간 동안 설정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2026년 01월 08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나.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본·지점

※자세한 내용은 집합투자업자(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한국거래소(www.krx.co.kr)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거래소 상장: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 증권에의 상장은 법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상장시장: 한국거래소

(2) 상장일: 2026년 01월 20일

(3) 거래방법 및 거래가격: 한국거래소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내 거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래에 따른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4) 상장요건

- 1) 규모요건: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집합투자증권 수가 10만좌 이상일 것
- 2) 유동성 요건: 지정참가회사¹(AP[Authorized Participant])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 지정참가회사¹란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장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장폐지 요건]

- 가. 추적오차율: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나.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가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 나 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라. 기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주) 집합투자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B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ER22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날 짜	주 요 내 용
2026.01.19	최초설정
2026.01.20	한국거래소 상장
2026.06.11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이도진/윤성노 → 이도진/곽찬, 부책임: 김동환/박찬호 → 강신영/봉철우)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상품으로 종료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 상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명칭: KB자산운용주식회사

나.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02-2167-8200)

※ 자세한 내용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2026년 07월 28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펀드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경력년수
			펀드수(개)	규모(억)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도진	1998년	책임	62	97,602	152.61	190.24	107.06	144.26	3년 1개월
곽 찬	1984년	책임	5	5,905	-	-			10년 8개월
강신영	1985년	부책임	35	77,442	62.76	88.14			13년 11개월
봉철우	1992년	부책임	24	23,677	123.01	138.58			7년 10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성명	주요 운용경력
이도진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 3년 1개월	강신영	DS투자증권 금융상품팀 3년 8개월 DB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8년 11개월 KB자산운용 인덱스퀀트운용본부 2년 8개월 KB자산운용 ETF운용본부 2년 4개월
곽 찬	프렌드홀딩스 주식운용본부 1년 9개월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 8년 9개월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2개월	봉철우	라임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년 3개월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1년 7개월 K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5년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ETF운용본부 및 주식운용본부가 공동운용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상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담당 팀원에 한하여 운용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합니다.

- ※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과보수가 약정된 투자신탁 운용규모: 해당사항 없음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2026년 07월 28일 기준)

성 명	운 용 기 간	비 고
윤 성 노	2026.01.19~2026.06.10	주식운용본부
곽 찬	2026.06.11~현재	
김 동 환	2026.01.19~2026.06.10	ETF운용본부
강 신 영	2026.06.11~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 Primary Market (ETF 발행시장)

ETF는 특정지수를 대표하는 인덱스와 동일한 수익을 얻고 인덱스의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 Secondary Market (ETF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에서는 발행시장을 통해 설정된 ETF가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을 통해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 ETF 시장은 두가지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미 발행된 ETF가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처럼 매매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과 ETF가 설정·해지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이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서 설정·환매가 일어나게 되고, 유통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과 지정참가회사가 거래소를 통해서 ETF를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매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은 ETF에 투자하기 위해 주로 유통시장을 이용하고, 발행시장은 차익거래나 대규모 설정·해지시에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되,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를 비교지수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를 안정적으로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②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이하	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
③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⑦	파생결합증권	10%미만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

		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⑧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이하
⑩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⑪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및 ③~⑦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및 ③~⑦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② 및 ⑧~⑩의 투자한도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합니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채권 및 어음 등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③ 및 ⑤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 운용,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증권에 대한 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 증권에 대한 대여: 수수료 수취를 통한 수익률 증진, 매매 편의성 증대(ETF에 해당되는 경우로, ETF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하므로 시장조성자들은 호가 수량 확대 및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할 수 있음) 등		
나. 증권에 대한 차입: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	

	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①~④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①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②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①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 목·마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④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경우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동일종목에 대한 실질 익스포저는 25%로 관리합니다. 1)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회사 발행한 증권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적용의 유예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	--	--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자산평가가 산출·발표하는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를 비교지수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1) 운용의 기본방침: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를 일정수준 이내에서 추종하면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기본적으로 비교지수 구성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초과수익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행합니다.

(가)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지주회사, 저PBR주 등에 투자

-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지배주주 편향이 줄어들고 지배구조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이 예상되는 기업

테마	키워드	대표 기업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 등	지주회사, 저PBR주	LS, CJ,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 정부 정책 및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상기 대상 테마 외에도 새로운 테마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대표 기업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을 기재한 것으로 해당 기업과 실제 투자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투자 유니버스 내 개별 종목을 대상으로 정량적 분석(시가총액, 거래량, PER, PBR 등) 및 정성적 분석(산업의 정책 수혜 여부, 성장 잠재력, 차별화된 경쟁력, 경쟁우위 지속가능성 등) 등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최종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다) 포트폴리오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타 저평가 대형 우량 기업 등에도 일부 병행 투자 할 수 있습니다.

3) 비교지수: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 소개

(가) 지수의 개요: 한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

※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ABCDEF): AI(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Bio&Healthcare), 문화(Culture&Contents),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나) 지수산출기관: 한국자산평가

(다) 기준일 및 기준지수: 2019년 12월 16일, 1,000pt

(라) 정기변경: 연 2회(6월, 12월 3주차 첫 영업일)

(마) 유니버스 선정기준: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의 일반주권인 보통주, 상장 후 3개월이 경과한 종목, 3개월 시가총액 5,000억 이상인 종목,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70% 또는 3억원 이상인 종목
2. 스펙(SPAC), 유동비율 10% 미만 종목, 3개월 거래 빈도(거래일수/영업일수) 60% 미만 종목, 연속적자횟수 3회 이상이고 50% 이상 자본잠식인 종목, 관리종목, 정리매매에 해당하는 종목, 그 밖에 구성종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제외
3. 상기 1, 2를 충족하는 종목 중 KAP 산업분류 기준으로 아래 분류에 해당하는 종목
 -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바이오, 제약, 엔터테인먼트, 식품, 개인용품, 우주항공 및 국방, 조선, 기계, 전기 장비, 전자 장비 및 기기, 재생에너지

(바) 편입대상종목 선정기준:

1. 종목 선정일 기준 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 내 '사업의 내용' 파트를 기준으로 LLM(Large Language Model) 방법 등을 통한 키워드와 종목의 유사도 산출
2. 테마 및 키워드 요건
 - 국가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담은 정부 문서를 기반으로 6개의 테마와 각 테마에 맞는 11개 키워드를 선정
 - 6개 테마: AI(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Bio&Healthcare), 문화(Culture&Contents),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Factory)
 - 11개 키워드: AI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음식료, 화장품, 방산, 에너지 발전,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
3. 키워드 별 유사도 스코어 하위 30% 종목 제거 후, 시가총액 백분위 스코어에 0.7, 키워드 백분위 스코어에 0.3의 가중치를 부과한 최종 스코어 산출
4. 각 키워드 별 최종 스코어 순으로 상위 5개 종목 선정(키워드 간 중복 편입 종목은 하나로 통합)

※ 정부 정책 및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 등에 따라 테마 및 키워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비중결정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

(아) CAP 비율: 25%

(자) 구성종목 수: 48종목(2025년 10월말 기준)

※ 포트폴리오 예시

구분	종목명	비율	구분	종목명	비율
1	삼성전자	27.9%	11	SK스퀘어	2.0%
2	SK하이닉스	23.2%	12	HD한국조선해양	1.9%
3	LG에너지솔루션	6.3%	13	HD현대일렉트릭	1.8%
4	삼성바이오로직스	4.9%	14	카카오	1.6%
5	두산에너지빌리티	3.2%	15	알테오젠	1.5%
6	HD현대중공업	3.0%	16	삼성중공업	1.5%
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9%	17	효성중공업	1.1%
8	한화오션	2.4%	18	하이브	0.8%
9	NAVER	2.4%	19	삼성에스디에스	0.8%
10	셀트리온	2.3%	20	한미반도체	0.8%

* 상기 포트폴리오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시점 기준으로 Top20 종목으로만 구성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 종목 및 비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자산평가, 2025년 10월말 기준

※ 지수에 관한 정보는 지수산출기관인 한국자산평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수산출기관 홈페이지(https://www.koreaap.com/kor/index_pe05_05.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의 산출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지수산출업자가 지수를 정상적으로 산

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비교지수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변경등록을 하고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방법 등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251조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한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을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riseetf.co.kr) 등에 매일 공고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HT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적오차 발생사유

이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이 투자신탁 수익률 간의 괴리(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 추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신탁 관련 비용의 최소화, 추적오차를 감안한 포트폴리오 납입자산구성내역 작성 등의 다양한 보완 방안을 실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비교지수대비 안정적인 초과성적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와 달리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지수사용료 등)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현금배당 등은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정(正)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투자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 등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효율적인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비교지수 관련 ETF 및 파생상품 등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편입한 ETF 및 파생상품의 수익률이 비교초지수 수익률과 괴리를 보일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순자산가치가 비교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로써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간의 상관계수를 관리합니다.

(2) 위험관리

- 1) 운용본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성격 및 공모/사모 펀드 구분에 따른 운용부서의 세분화를 통해 운용팀내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도입합니다.
- 3) 포트폴리오 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4) 바스켓 구성종목 모니터링 및 사후적 추적오차 점검을 통해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 되도록 관리합니다.

(3) 유동성 위험 및 그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ETF는 아래와 같이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므로, 별도의 비상조치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ETF 거래 위험: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투자신탁으로 유동성공급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ETF의 실시간 기준가를 중심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거래량이 낮은 ETF라도 유동성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매도 호가가 존재하여 거래가 가능하므로 ETF 거래 상의 유동

성 위험은 낮습니다.

2) ETF 내 투자자산의 유동성 위험: 상장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ETF는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또한, ETF의 환매는 발행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환매 청구 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여 지급하지 않고 PDF(자산구성내역)에 해당하는 주식(현금 일부 포함)으로 지급하므로 환매 청구에 의한 유동성 위험은 낮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KAP 코리아전략산업 지수(시장가격)”를 비교지수로 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변동률이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여 그에 따른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Leverage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특성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는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일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하면서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와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일반적인 액티브 펀드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벤치마크(비교지수)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 등의 운용전략을 수행하는 한편, ETF와 같이 비교지수의 수익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운용하며, 투자자는 증권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의 개념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평가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초과성과 추구위험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비교지수 구성종목을 기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또한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으로 손해가 예상되는 지주회사, 저PBR주 등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이 항상 초과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상황에 따라 비교지수대비 낮은 성과를 시현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발생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투자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액티브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도록 운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교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ETF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용의 실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추적오차는 시장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따른 운용상의 결과이며, 지수와의 괴리도는 매일 공고되는 추적오차를 공고로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이상으로 관리하여 비교지수와의 성과괴리를 일정수준 이내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총비용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 및 지수사용료 등 기타 운용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일반적인 패시브 ETF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적극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매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거래에 따른 순자산가치와의 괴리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시장가격으로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시장 가격은 순자산가치(NAV) 및 유통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시장가격은 이 투자신탁에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NAV보다 높게 또는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산출, 관리하는 지수산출기관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산출기관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일시 또는 상당기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거래가격은 당해 ETF의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1좌당 예상기준가격(i-NAV)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ETF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의 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유동성 공급자가 해지목적으로 거래하는 대상의 가격 움직임에 의해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매수 매도 호가가 1좌당 기준가격(NAV)과 차이를 보일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의 마감 전 동시호가에서 유동성공급자의 호가 공백이 발생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당해 ETF에 편입된 자산의 평가 기준 시점과 ETF의 종가시점이 상이한 경우 등의 이유로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i-NAV(Indicative Net Asset Value, 추정순자산가치)는 ETF를 구성하는 기초종목들의 최근 가격에 기반한 예상가격으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data.krx.co.kr/contents/MDC/MAIN/main/index.cmd), 거래 증권사 HTS 또는 ETF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의 추적대상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만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은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산출기관이 지수발표를 중단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이 투자신탁은 상장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제약 종목의 일부 편입가능성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반영하여, 미래 성장 전략 산업 테마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일반 펀드보다 투자대상 종목의 가격변동 위험 및 신용 위험 등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위험	파생결합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산의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여 파생결합증권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계약조건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 발생시 편입한 파생결합증권의 조건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기 청산되어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은 다른 증권과 달리 발행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유동성이 적은 자산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파생결합증권을 만기 이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중도 매각에 따른 가격 손실 및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의 손실 또는 구조상 설계되어 있는 최대 손실률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투자에 따른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기간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 건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과정에서 거래량 부족으로 호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차거래 위험	증권 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 분배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되는 액티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금(투자신탁분배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이와 별도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일부 보유 자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수취된 배당금과 이자 등에서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하여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유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현금 등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 때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환매에 따른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축소되는 경우 분산투자 등이 어려워져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해지의 위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해당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함

회수곤란 위험	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인투자자의 경우 보유 증권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판매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 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투자신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KAP 코리아전락산업 지수(시장가격)”의 변동률을 초과하도록 운용하므로 주식하락에 따른 원본손실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KB자산운용(주)는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국내투자 신규펀드 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통 위험)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고위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국내신용등급과 해외신용등급이 상이한 경우 국내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신용등급만 있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5] 제35호 라 목에 따라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할 수 있음
5.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종합 위험등급을 1등급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외국통화의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상향할 수 있고, 환율위험에 대한 헤지가 이루어져 환율의 변동성이 투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환율위험이 위험등급에 이미 반영된 경우 등 등급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을 상향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2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7.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개별펀드의 위험자산 투자비율은 운용전략·벤치마크(BM)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주) 이 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기준으로 주로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를 가장 큰 리스크요인 사항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 분류 기준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1) 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은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매매를 통해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에 의한 매입

(가)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인투자자에 한하며, 법인투자자는 설정단위(CU: Creation Unit) 또는 그 정배수에 해당하는 납부금 등을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으로 납입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금전에 의한 납입을 통해 청약할 수 있습니다.

(나)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다) 설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2) 설정단위(Creation Unit)

1)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설정단위의 변경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산금액(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그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산출: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한 납부금 등의 평가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차액
- 정산일: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 등을 반영한 순자산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함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입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납입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4)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신탁 설정청구의 효력 등

-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15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3시 30분(1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이 납입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2)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과 납입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합니다)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합니다)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증가에 의한 평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나)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상기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다)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함

4) 투자자가 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입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입금 등의 매매”라 합니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입금 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입금 등을 매매하여야 합니다.

☞ 납입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 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 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유가증권의 매매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입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동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가)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나)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 납입금 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입금 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입금 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입금 등의 매매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7) 1)~6)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8) 1)~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증권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증권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증권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증권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증권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증권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9)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 투자자의 설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취소에 따른 자산 전부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 설정 절차

설정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설정청구일(T)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주식, 현금 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동일하지 아니한 자산으로 설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주식 등을 매매하여 납입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재구성하여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판단(가격, 시기, 수량 등)은 지정참가회사에 위임을 하게 되고, 투자자는 동 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

-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익영업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설정일 (T+2)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에 집합투자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집합투자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집합투자증권 입고시간을 T+2

일 한국거래소 영업개시 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집합투자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정산금액 존재시, 정산 및 집합투자 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 등 이체(전자등록 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	납입자산구성내역 (한국거래소 등)	설정내역 확인 및 승인		집합투자증권 발행(전자등록기관 전 자등록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 확인

나. 환매

(1) 환매방법

- 1) 시장을 통한 환매: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결제 절차와 동일합니다. (매도일로부터 3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
- 2) 지정참가회사를 통한 해지에 의한 환매: 법인의 환매청구는 지정참가회사 등을 통하여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 보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가능합니다. 환매에 의한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수령합니다. 개인의 경우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환매는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3시 30분(15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3시 30분(1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가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1)~3)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투자자가 1)~4)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증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유가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유가증권 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투자자인 경우 환매자산 지급 방법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인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료로부터 일정시한 전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
- 투자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당해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1)~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5)에서 정하는 날까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8) 7)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입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9) 1)~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다)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 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라)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시: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3영업일 전에 집합투자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마)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9)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3) 집합투자증권 환매 절차

환매청구일 직전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입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환매청구일(T)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집합투자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환매청구일 익영업일(T+1)

-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익영업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환매일(T+2)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동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 등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집합투자증권 제출 및 환매자 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요구	인수도명세 확정 및 투자자 통보	투자자계좌에서 집합투자증권 인출 및 자산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입자산구성내역 통보	환매내역 확인		투자신탁 일부해지
전자등록기관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 환매제한

상기의 환매관련 절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지급기간 종료에 따른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당해 자산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유동성 위험: 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X	O	X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게시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 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최초 기준가격 산정방법	최초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공고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지정참가회사 및 판매회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실의무, 평가의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산구분	평가기준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취득한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다만, 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국내 비상장채권 (CP, CD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채무증권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파생결합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또는 계산대리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결정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는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펀드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펀드가 거래되는 외국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KB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운용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및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두며, 해당 평가위원회는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보수 및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 수 료 구 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가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전환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	비고(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459	최초설정일로부터 2026.03.31까지, 매3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7영업일 이내 지급
판매회사보수(지정참가회사포함)	0.001	
신탁업자보수	0.0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0	
투자신탁보수 합계	0.500	-
기타비용	-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0.500	-
동종유형 총 보수	-	-
증권 거래비용	-	사유발생시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비용 예시: 예탁 및 결제비용,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지수사용료, 해외보관대리인비용 등

※ 총 보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예시: 증권·선물·옵션 등 매매수수료, 콜론·환매조건부매매 중개수수료 등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증권거래비용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해당사항 없음)

※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기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천원)
금융비용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해당사항 없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2. 투자신탁재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정보비용
 8. 해외자산의 경우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건당 결제 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보관비용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 부수비용(out of 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천원)

구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1	105	161	281	632

※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및 분배금 지급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지급기준일: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종료일의 직전 영업일)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금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금(투자신탁분배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다만, 제4호에 따른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은 제외합니다]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3) 집합투자업자는 (2)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의 평가이익·매매이익을 포함한 전체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까지 지급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중인 자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 일부 보유 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투자신탁으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07월 0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현금분배시: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② 매도시: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매매차익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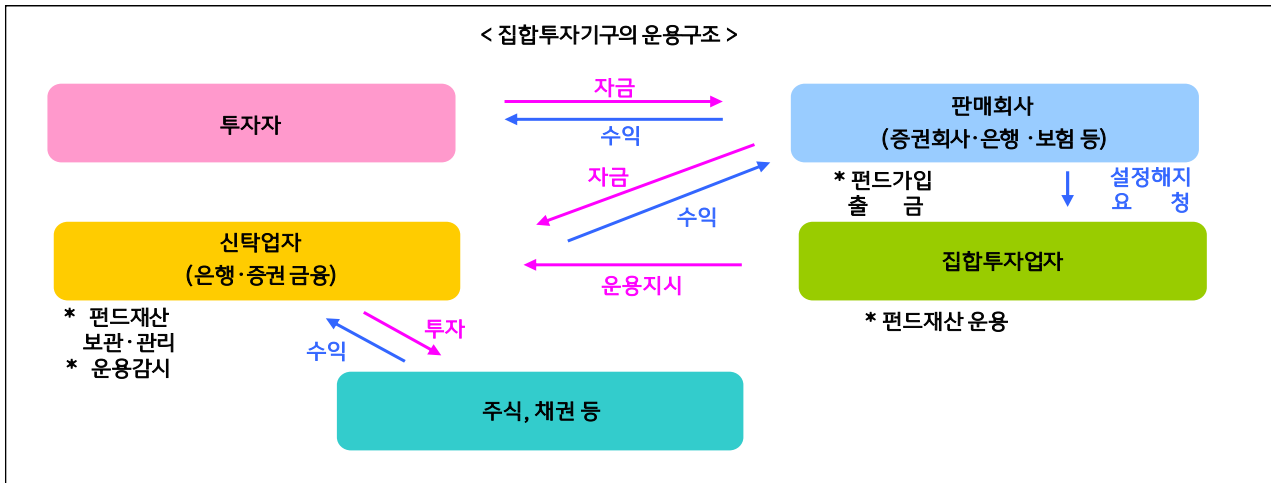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설정 후 1년 미경과로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B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 2167-8200
주요 연혁	1988.04.28 국민투자자문 설립(모회사 국민투자신탁 지분 100%) 1992.12.07 대주주 변경(국민투자신탁 → (주)주택은행) 1992.12.09 '국민투자자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로 사명변경 1997.05.20 납입자본금 300억원으로 증자,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투자신탁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주은투자자문(주)'에서 '주은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1997.08.28 투자신탁운용업 개시 2000.01.11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지분참여(20%) 2000.06.30 자본금 83억 증자 2002.06.10 '주은투자신탁운용(주)'에서 '국민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변경 2004.04.29 '국민투자신탁운용(주)'에서 'KB자산운용(주)'로 사명변경 2008.09.29 대주주 변경((주)국민은행 → (주)KB금융지주)
자본금	38,337,750,000원
주요주주	(주)KB금융지주 100%
투자신탁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계열회사)

나. 주요 업무

-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2)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2)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투자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4)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제38기	제37기
기 간	2025.12.31	2024.12.31
현금 및 예치금	126,200	39,01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477,575	290,7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341	472
관계기업투자주식	7,482	7,146
파생상품자산	333	5
대출채권	4,802	4,210
유형자산	16,760	15,251
기타금융자산	46,070	39,002
이연법인세자산	7,900	7,913
기타자산	9,941	11,173
자산총계	697,405	414,942
예수부채	4,000	13,709
파생상품부채	7	996
차입부채	20,009	-
기타금융부채	208,729	58,820
충당부채	1,525	1,498
순확정급여부채	297	165
기타부채	67,805	45,037
부채총계	302,373	120,224
지배기업주주지분	394,263	294,383
자본금	38,338	38,338
자본잉여금	-1,417	-1,4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75	922

이익잉여금	355,568	256,541
비지배지분	769	335
자본총계	395,032	294,718
부채 및 자본총계	697,405	414,942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제38기	제37기
기 간	2025.01.01~2025.12.31	2024.01.01~2024.12.31
영업수익	325,721	246,184
영업비용	166,092	156,556
영업이익	159,629	89,628
영업외수익	1,754	740
영업외비용	1,369	2,21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60,014	88,148
법인세비용	40,000	21,776
당기순이익	120,014	66,372
기타포괄이익	840	1,284
총포괄이익	120,853	67,657

라. 운용자산 규모

(2026년 07월 28일 현재, 단위: 억좌)

투자신탁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재간접형					
수탁고	195,892	69,028	189,470	75,424	76,188	83,675	182,412	40,054	204,686	1,116,828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해당사항 없음

3. 투자신탁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전화번호	☎ 1588-7000
인터넷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나. 주요 업무

(1)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 (2)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 1)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의 집행, 취득한 증권 등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3)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지시가 법령, 신탁계약서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의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케이비펀드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전화번호	☎ 02-2073-0595
인터넷 홈페이지	www.kbfps.com

나. 주요 업무

-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산출업무를 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한국자산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94-27
전화번호	☎ 02-3215-1450	☎ 02-399-3350	☎ 02-398-3900	☎ 02-721-5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 (1)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2)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 tool 제공 업무
- (3)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4)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5)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6)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1) 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3) 연기수익자총회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5) 투자신탁의 합병
- 1)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1)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1)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주체¹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투자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해당 주체¹: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및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및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KB자산운용 홈페이지(www.kb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취소
- (5) 투자신탁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상장이 폐지된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매일경제신문(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경향신문 포함)에 공고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집합투자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 (3)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종료 및 해지 후 2월 이내에 법 제 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나)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라)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일간신문 또는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www.kbam.co.kr)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하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bam.co.kr), 판매회사 홈페이지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경향신문에도 공고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투자신탁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서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은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8)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가)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 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나)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 (다)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2)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가)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 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 분	중 개 회 사 의 선 정 기 준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KB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펀드(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수익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집합투자기구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재산을 특정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중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참가회사계약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부금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설정단위(Creation Unit)	투자신탁의 설정 및 해지에 필요한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최소 수량을 말합니다.
설정단위의 평가금액	설정단위에 좌수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는 해지를 위하여 현금, 구성종목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액티브상장지수펀드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는 비교지수 대비 안정적인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